

1. 제정이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이 신설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2023. 9. 15.)에 따른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요건, 사용고지, 그 밖에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기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법률 제20153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됨.

이에 따라 경찰관의 공정한 법집행과 국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권리 침해 등 오남용 방지를 위해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요건, 사용고지 방법을 구체화하고 그 밖에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기준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아울러 경찰관 개인이 구매한 경찰착용기록장치에 대한 관리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안 제2조)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과 경찰착용기록장치로 수집한 영상·음성 기록과 관리에 대하여 규정

나. 경찰착용기록장치 ‘사용요건’에 대한 구체적 범위(안 제3조)

경찰착용기록장치는 경찰관의 직무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고 경찰관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폭언·폭행 발생 등 공무집행방해, 석방이 예정된 수형자 및 보호관찰이 종료되는 가석방자의 재범방지, 풍속영업소의 준수사항 검사, 성폭력 및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등 예방·방지,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복 예방·제지, 주요 인사 경호, 대테러활동 등 국가안전을 위한 활동, 집회·시위와 다중운집에 따른 위험 예방 등 질서 및 안전유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선박의 해상항행 보호조치, 불법어획물의 방류 명령, 그 밖에 명백히 사람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경찰관이 직무수행과정에서 경찰착용기록 장치의 사용이 필요한 직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다. 촬영사실 표시 등 ‘사용고지’(안 제4조)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안내문구 부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이나 방법 등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촬영 사실 표시 방법 규정

라. 교육훈련(안 제5조)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규정

마. 영상·음성 기록 보관 기간(안 제6조)

경찰착용기록장치로 수집한 영상·음성기록의 보관 기간 규정

바. 개별 구매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안 제7조)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정부예산으로 구매·보급하기 전까지 개별 구매한 경찰착용기록장치는 소속 관서에 등록 후 사용하도록 규정

사. 유효기간(안 부칙 제2조)

경찰관이 개별 구매한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기한을 정부예산 구매·보급 완료가 예상되는 시점인 2028년(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 도입 중기사업계획 상 4년<’25년~’28년> 소요)으로 유효기간 규정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없 음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 및 제10조의6에 따라 경찰관이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직무수행의 구체적 범위와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기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과 경찰착용기록장치로 수집한 영상·음성의 기록과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사용 요건) 법 제10조의5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고, 범죄와 관련된 경우에는 범행과의 시간적 근접성 및 범죄 예방·제지의 긴급성이 있어야 한다.

1. 법 제2조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폭언·폭행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6조의2 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에 따라 통보되는 정보의 대상자인 수형자·가석방자의 재범방지
3.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풍속영업소에 출입하여 같은 법 제3조의 준수사항 검사

4.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여성폭력,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에 따른 노인학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등의 예방·방지
 5.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예방·제지
 6.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요 인사(人士)의 경호
 7.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테러 활동 등 국가안전을 위한 활동
 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집회·시위와 다중운집에 따른 위험 예방 등 질서 및 안전 유지
 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나목1)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및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 위해의 방지
 10. 「해양경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상항행 보호조치
 11.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경찰관의 방류명령
 12.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명백히 사람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조(사용 고지) 법 제1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불빛
 2. 소리
 3. 안내판

4. 안내서면
5. 안내방송
6. 안내문구 부착
7.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이나 방법

제5조(교육 훈련)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관이 경찰착용기록장치 사용 부서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경찰착용기록장치 사용 전에 장치 조작방법, 사용지침,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련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6조(영상·음성 기록 보관 기간) 경찰착용기록장치로 수집한 영상·음성 기록의 보관기간은 수집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증거보전 등 계속 보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목적 달성 시까지 보관할 수 있다.

제7조(개별 구매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① 경찰관이 개별 구매한 경찰착용기록장치의 경우 법 및 이 영에 따른 일정한 기능을 갖추고 착용 또는 휴대할 수 있는 경찰착용기록장치가 보급될 때까지 이를 소속 관서에 등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당시 경찰관이 개별 구매 후 소속 관서에 등록한 경우에는 그 장비는 등록을 마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찰착용기록장치의 등록절차, 촬영한 영상 등의 관리, 안전성 확보조치 등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8조(세부 사항) 이 영에서 규정한 내용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7조는 2028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미래치안정책과	
연 락 처	02-3150-2422